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93호(號) 1928(昭和 3)년 4월 24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9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5(대정(大正) 2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88호(號) 당사(當社)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4월2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본칙(本則) 제2조(條)제1호(號) 중(中) 「철도성선(鐵道省線) 각(各) 역(驛: 덕도선[德島線], 고지선[高知線] 및 작비선[作備線]을 제[除]함)」을 「철도성선 각 역(덕도선[德島線], 고지선[高知線], 작비선[作備線] 및 인미남선[因美南線] 각 역을 제[除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